
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(안 제5조제2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